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10. 26.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10.16.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5.10.19.

다. 상정일자 : 제19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5.10.2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생활보장과장 김 은 영

가.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세분화됨.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관련 조례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
- 2) 수급자, 수급권자 등 혼용되어 쓰이는 용어의 통일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 본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안 제2조의 “저소득주민”에 대한 정의를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대상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 타 : 없 음